

주식회사 풀무원 보상위원회 운영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정관 제37조의2, 이사회규정 제12조에 의하여 주식회사 풀무원(이하 '회사'라 한다)의 보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기능) ① 위원회는 임원들이 내부적으로 공평하고 외부적으로 경쟁력 있는 보상수단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보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사회의 책임을 수행한다.

② 이 규정상 임원은 상법상登記임원인 대표이사 및 이사를 의미한다.

제 4 조 (직무와 권한) 위원회는 정관 및 이사회규정의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 심의한다.

1.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
2.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
3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
4. 성과목표 이행 실적에 따른 보상기준과 지급방법
5. 보수체계의 설계·운영 및 그 설계·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
6.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
제 2 장 구 성

제 5 조 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(이하 '위원'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
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.

제 6 조 (위원장) ① 위원회는 제8조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
③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으로 먼저 선임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다만, 선임된 일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7 조 (회의성립 및 위원회의 소집)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소집한다.

③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일시, 장소, 의안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4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8 조 (의결방법)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② 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 9 조 (관계인의 의견 청취)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9-2 조 (외부 자문 등)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로부터 독립된 법률고문 등 외부 전문가의 보상에 관한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,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외부 전문가와의 계약 체결, 변경 및 해지 등은 전적으로 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.

제 10 조 (이사회와의 관계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며,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한다.

제 11 조 (의사록)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4 장 기 타

제 12 조 (간사) ① 위원회 사무 전반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② 간사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담당 임원 또는 부서장으로 한다.

제 13 조 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(1)

이 규정은 2005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)

이 규정은 2016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3)

이 규정은 2023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